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87
----------	-------

발의연월일 : 2025. 10. 2.

발 의 자 : 이용우 · 조계원 · 민병덕
김남근 · 이학영 · 박 정
김성희 · 이강일 · 백승아
박홍배 · 김우영 · 정혜경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산·사산한 여성 노동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산 후 7~10일 동안은 출혈, 감염, 생리 불순, 생리통 증가, 자궁 내막 유착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으며 유산·사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함. 배우자의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자녀 돌봄과 가정 운영에 대한 남녀 공동 참여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 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 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난임치료휴가”를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로 한다.

제7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3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 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 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 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u>난임치료휴가</u> 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 라 한다)을 지급한다. 1.·2. (생 략)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 ----- ----- ----- ----- ----- ----- ----- ----- <u>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 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 산 휴가</u> ----- ----- -----. 1.·2. (현행과 같음)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 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 ----- ----- ----- ----- ----- ----- -----.

